XpERP를 이용한
2024년 연말정산 안내

AEGIS ENTERPRISE | XpERP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참고 사이트

· 국세청 https://www.nts.go.kr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 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환급 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 귀속 개정세법요약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좌 동)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좌 동)
○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❷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4년 귀속 개정세법요약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이상</th></tr>
<tr><td>고정금리 + 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1,8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d>300만원</td></tr>
</table>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추 가></td>
<td>□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만원~2,0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이상</th></tr>
<tr><td>고정금리 + 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2,000만원</td><td>1,800만원</td><td>800만원</td><td>600만원</td></tr>
</table>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td></tr>
</table>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자녀세액공제
○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추 가></td><td>□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손자녀</td></tr>
</table>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 설></td><td>□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좌 동)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td></tr>
</table>

<적용시기> 20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공제율) 15%	○ (좌 동)
○ (공제한도) ❶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 한도 미적용 ❷ ❶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❶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❷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개정취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좌 동)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좌 동)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추 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 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사택제공 이익 등	○ (좌 동)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❷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 (좌 동)
<추 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종 전	개 정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개정취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 아래 요건(❶+❷+❸+❹)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❶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 ❷ 신탁설정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❸ 금전으로 신탁할 것 ❹ 위탁자가 ❶의 공익법인 등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 (좌 동) ○ (좌 동) ❹ 위탁자 등*이 ❶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 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위탁자 +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적용시기> 2024.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특례기부금의 범위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 범위 조정
○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좌 동)
○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❶+❷) ❶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❷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좌 동) ❶ 5만원 → 8만원 –(좌 동) ❷ (좌 동)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적용시기>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추가
○ (적용대상) ❶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❷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❸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 (좌 동)
<추 가>	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 (좌 동)
<신 설>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출자금액×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10%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적용기한) 2025.12.31.	○ (좌 동)

<적용대상>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20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귀속 개정세법요약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취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대상 확대
○ (대상) ❶ 또는 ❷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❶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❷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좌 동)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좌 동)
<추 가>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감면율) 10년간 50%	○ (좌 동)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취지> 조세회피 방지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 ❶(법 §1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❷(법 §18의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❸(법 §18의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정취지>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간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 (내용) 19% 단일세율*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좌 동)
<신 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공(소득령 부칙)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좌 동)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24년 귀속 개정세법요약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종 건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좌 동)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 컴퓨터학원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건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좌 동)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96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건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좌 동)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신 설>	□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 ❶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에 가입 ❷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❸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적용기한) 2023.12.31.	○ 2024.12.31.

<적용시기> 20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귀속 개정세법요약

(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 동)
○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좌 동)
<신 설>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 적용기한 연장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 (좌 동)
<추 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귀속 개정세법요약

참고

2024년 귀속 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2024.12월 국회 통과되면 확정)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폐지 ○ ❶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❷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❸공통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개정취지> 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 (나이요건) 20세 이하	□ 나이요건 명확화 ○ (좌 동) ○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4)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개정취지>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좌 동) ○ (좌 동)
<추 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직장 내역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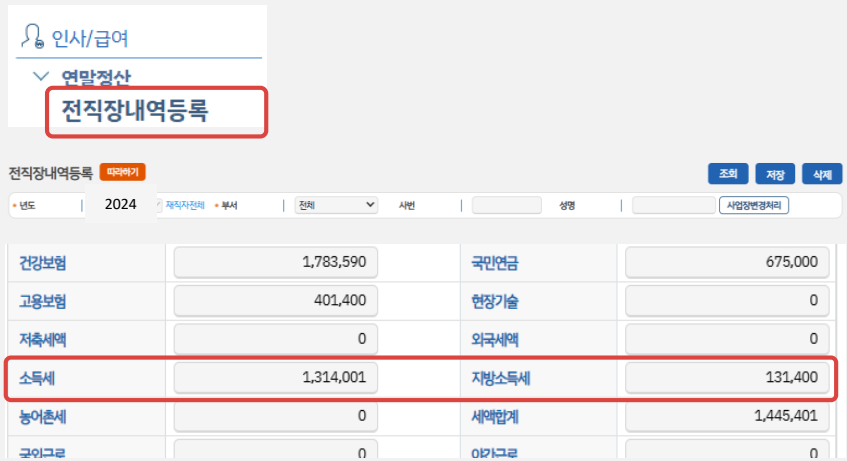

중간 입사자의 전 직장 원천징수금액을 등록 하는 메뉴입니다.

- 인사/급여>연말정산>전 직장 내역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 조회 시 2024년도 입사자만 조회됩니다.
  (재직자전체 체크 시 이전 입사자도 조회 가능)
- 등록할 사원을 선택 후 전 직장에서 가져온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 식대는 표기 비과세이므로 식대도 등록합니다.
- 소득세, 지방 소득세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 종전 근무지가 4곳 이상인 경우 **종전 근무지 4**에 총 급여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등록합니다.

3.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

2024년에 계산된 급여를 월별로 수신 하는 메뉴입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원 정보를 조회합니다.

· 사원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면 2024년에 계산된 급여가 표기됩니다.

· 연급여수신 버튼을 클릭하여 전 직원의 급여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수신 후 급여 금액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역이 없을 경우 최종 월분에 총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연급여수신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를 재 수신하는 경우 입력한
급여 금액은 초기화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금액은 건강보험 + 장기 요양 보험 금액입니다.

3.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설정 시

지급공제	항목명	항목코드	출력순서	사용여부	상여포함	과세대상	일수계산	월차계산	연말정산	퇴직정산	비과세한도
지급	제수당	제수당	3	☑	☑	☑	☑	☑	☑	☑	0
지급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	4	☑	☑	☑	☑	☑	☑	☑	200,000
지급	방화수당	방화관리사	5	☑	☑	☑	☑	☑	☑	☑	0

월	급여	상여	급여합계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대	야간근로
01	2,700,000	0	2,700,000	300,000	58,750	5,870	21,600	105,930	0	100,000	200,000
02	2,700,000	0	2,700,000	300,000	58,750	5,870	21,600	105,930	0	100,000	200,000
03	2,700,000	0	2,700,000	300,000	58,750	5,870	21,600	105,930	0	100,000	200,000
04	2,700,000	0	2,700,000	300,000	58,750	5,870	21,600	105,930	0	100,000	200,000
05	2,700,000	0	2,700,000	300,000	58,750	5,870	21,600	105,930	0	100,000	200,000

· 인사/급여 > 공통 정보관리 > 급여 기초정보 메뉴에서
항목 코드 야간근로수당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화, 경비직일 경우 설정 합니다>

① 과세대상 V체크 + 비과세한도 금액 입력

· 연말정산>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서 야간근로에 금액 표기 되고, 비과세에도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시간외근무수당) 중 연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단,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 노무직만 적용되며, 관리직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 과세 설정 시

지급공제	항목명	항목코드	출력순서	사용여부	상여포함	과세대상	일수계산	월차계산	연말정산	퇴직정산	비과세한도
지급	제수당	제수당	3	☑	☑	☑	☑	☑	☑	☑	0
지급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	4	☑	☑	☑	☑	☑	☑	☑	0
지급	방화수당	방화관리사	5	☑	☑	☑	☑	☑	☑	☑	0

월	급여	상여	급여합계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대	야간근로
01	2,900,000	0	2,900,000	100,000	75,860	7,580	23,200	113,780	0	100,000	0
02	2,900,000	0	2,900,000	100,000	75,860	7,580	23,200	113,780	0	100,000	0
03	2,900,000	0	2,900,000	100,000	75,860	7,580	23,200	113,780	0	100,000	0
04	2,900,000	0	2,900,000	100,000	75,860	7,580	23,200	113,780	0	100,000	0
05	2,900,000	0	2,900,000	100,000	75,860	7,580	23,200	113,780	0	100,000	0

인사/급여 > 공통 정보관리>급여기초정보 메뉴에서
항목코드 야간근로수당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직인 경우 설정합니다>

연말정산 > 연근로소득내역 등록에서 야간근로 및
비과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

Q. 직원이 지역가입으로 납입한 국민연금금액을 합산 요청하였습니다. 어디에 금액을 등록하나요?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에서 국민연금 칸에 금액을 국민연금 금액을 합산하여 등록해 주세요.

Q.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해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Q.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오. 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에 지역 가입자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 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Q. 직장인 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부양가족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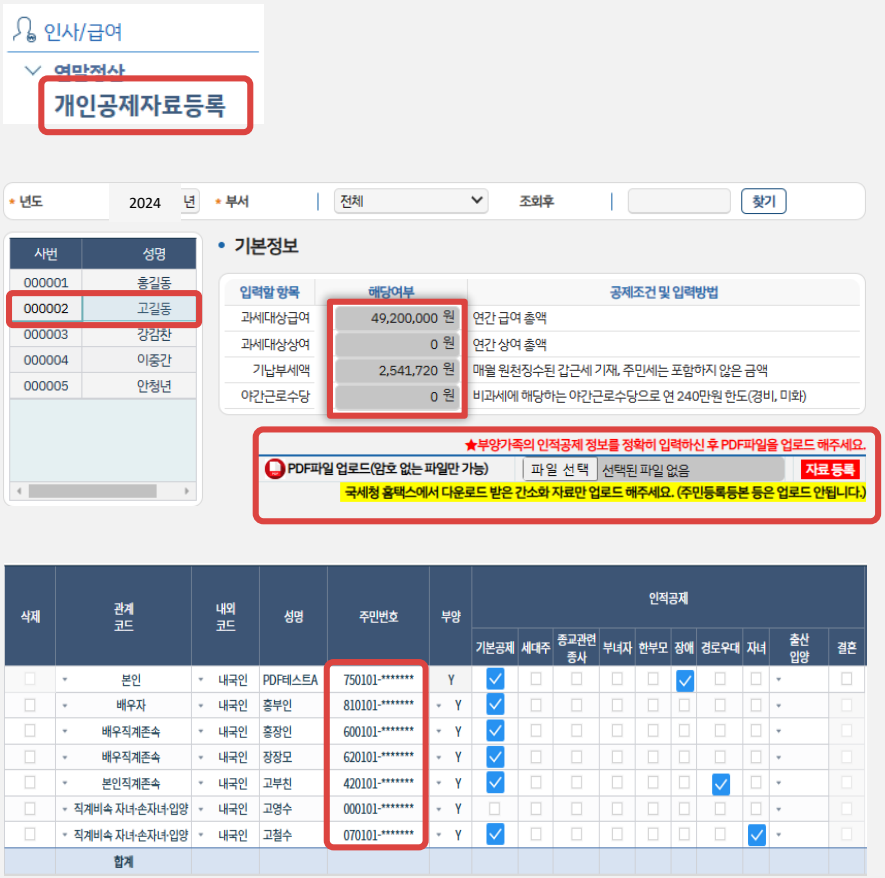

개인 공제 자료 등록은 근로자의 가족 사항 및 추가공제 사항, 공제받을 금액 등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 연말정산을 작업할 사원을 클릭하면, 연근로소득내역에서 저장한 과세대상급여, 과세대상 상여 기납부세액, 야간근로수당 등이 나타납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직장 내역 입력 한 사원의 급여 및 세액은 전직장 내역 + 연근로소득내역에 등록한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 PDF 등록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가 일치하는 정보만 업로드 됩니다.

· 교육비는 자료 등록 후 교육비 구분을 선택한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PDF 가족 정보와 부양가족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금액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 간소화자료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x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부양가족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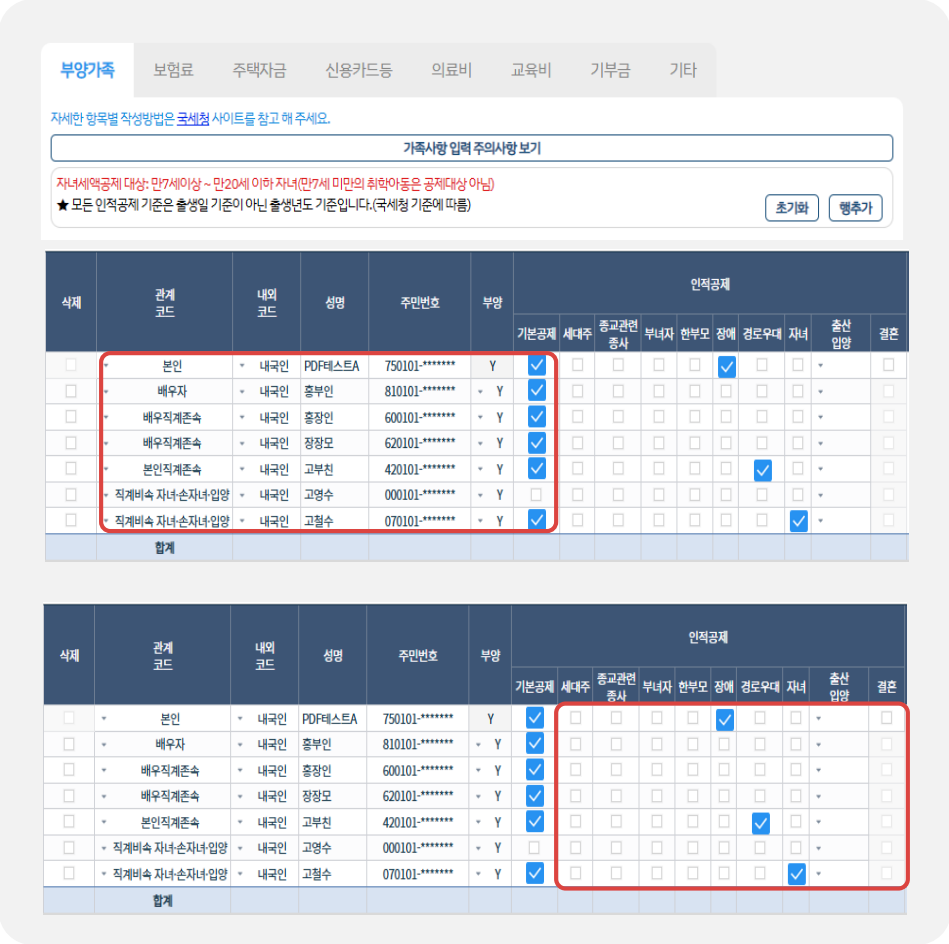

관계코드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x	x	소득금액 연간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이상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주거 형평상 별거 인정) 해외 거주는 제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포함)	20세이하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x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20세이하 or 60세 이상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18세이하 (조건부 연장 가능) (장애인일경우 제한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초생활수급자	x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부양가족 대상 요건 (추가공제대상)

	요건	특이사항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 중복불가
한부모	· 배우자가 없음 (남성, 여성 모두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중복불가
장애	· 소득세법 장애인	
경로	· 70세 이상 (54.12.31.이전)	
자녀	· 8세 이상의 자녀	
출산0입양	· 당해년도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결혼	24~'26년 혼인신고 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부양가족 정보는 인사/급여 > 인사관리 > 인사 기본 정보 메뉴의 가족 사항에 등록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 가족 사항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단 행추가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대상 요건에 맞춰 인적 공제 구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부양가족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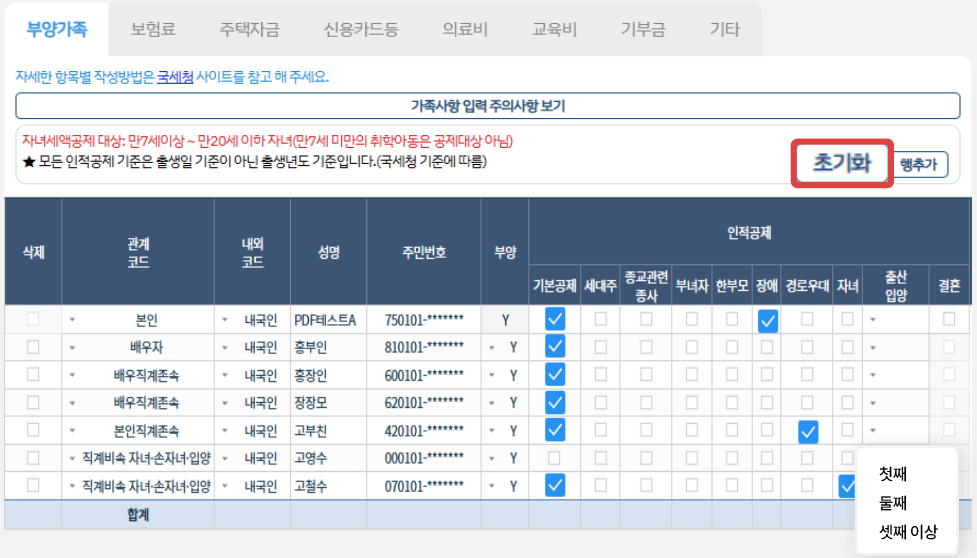

· 개인 공제 자료 등록 초기화 버튼 클릭 시 가족 구성원의 인적공제 및 금액 정보는 초기화되어 새로 기입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입양은 당해 연도 출생자일 경우 체크합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부양가족 등록)

Q. 부녀자공제는 여성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아닌 미혼 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로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녀자공제와 한 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부녀자 공제(연 50만 원)와 한 부모 공제(연 100만 원)가 중복될 때는 한 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Q.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보험료 및 연금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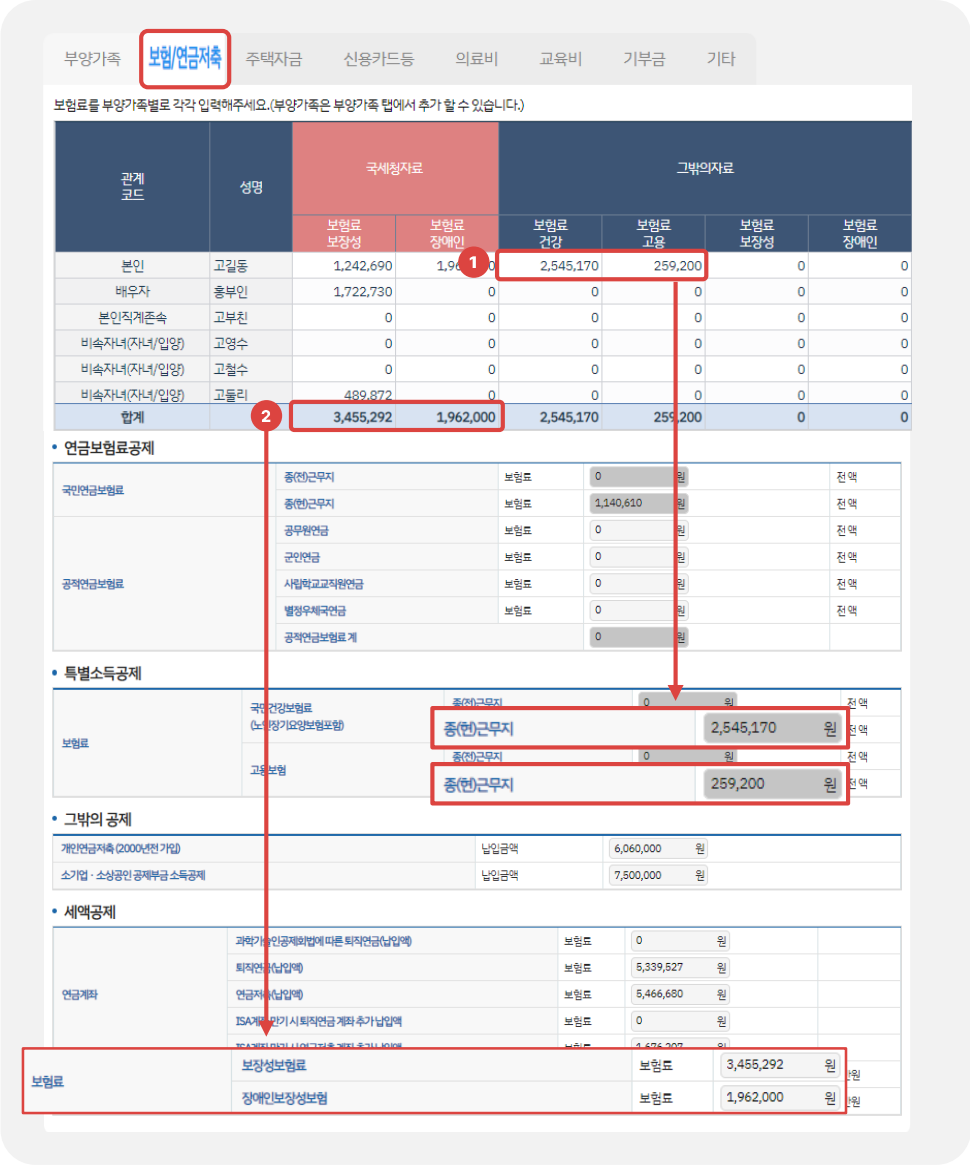

①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 건강 | 보험료 고용 금액은
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 등록 된 금액이 표기됩니다.

② 보험료 보장성 금액 및 보험료 장애인 금액란에는
제출자료를 확인하여 각 사용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보험료 총액이 하단 보험료 금액란에 자동으로
합산 표기 됩니다.

✓ 연근로소득내역에 보험료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공제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보험료 및 연금계좌)

Q. 보험료 탭의 부양가족별 금액과 항목별 (건강보험료) 입력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개인 공제 자료등록에서 저장 후 연근로 소득 내역 등록에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 발생합니다.
보험료 탭의 상단의 국세청 자료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 금액을 수정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건강보험 금액과 고용보험 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금액과 상이 합니다.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보험료 정산 시기 등으로 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실제 보험료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출한 연금보험료 금액 등이 간소화 자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4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 가능한가요?

네,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Q.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 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보험료 및 연금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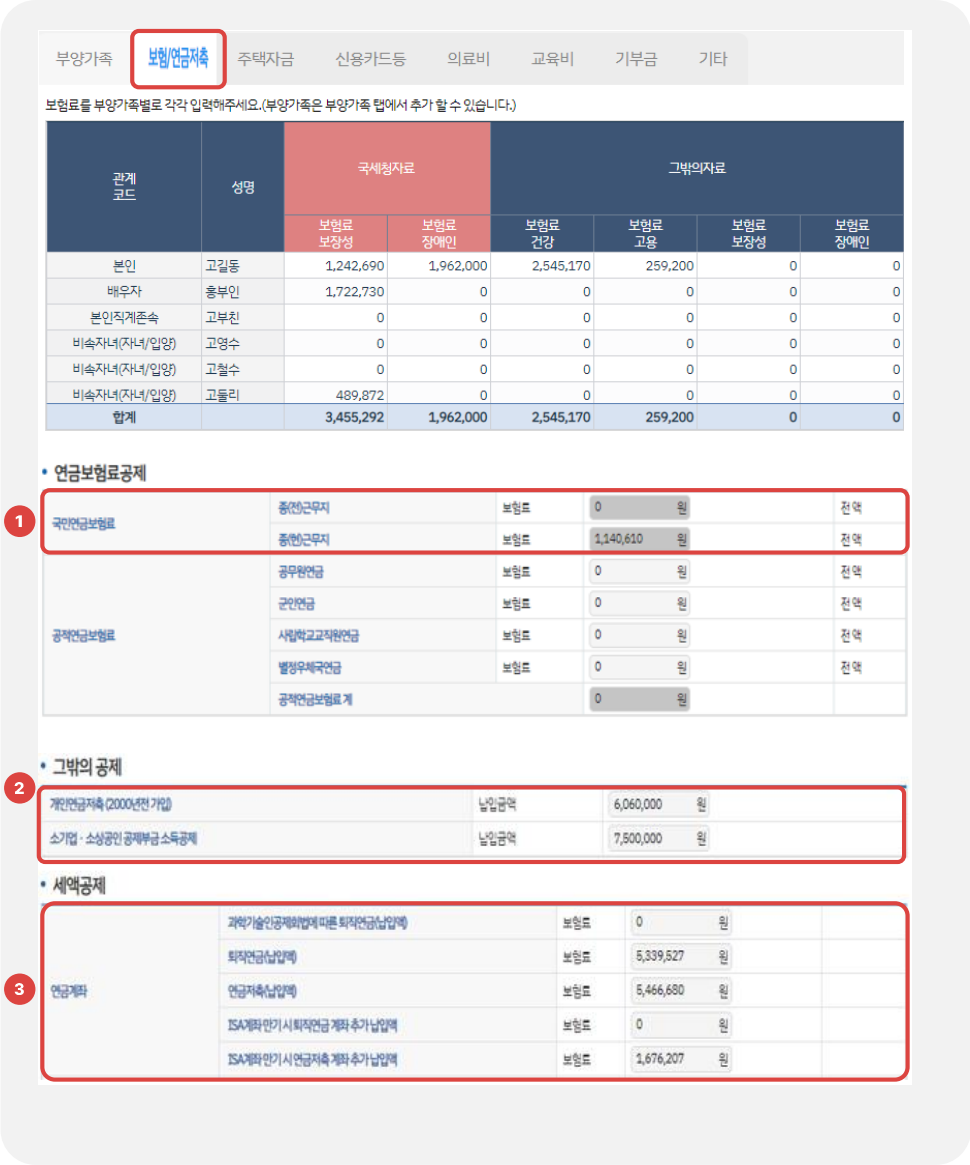

부양가족 | 보험/연금저축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보험료를 부양가족별로 각각 입력해주세요.(부양가족은 부양가족 탭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본인	고길동	1,242,690	1,962,000	2,545,170	259,200	0	0
배우자	홍부인	1,722,730	0	0	0	0	0
본인직계존속	고부친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영수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철수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둘리	489,872	0	0	0	0	0
합계		3,455,292	1,962,000	2,545,170	259,200	0	0

• 연금보험료공제

1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원	전액
	종(현)근무지	보험료	1,140,610 원	전액
공적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군인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	0 원	전액
	공적연금보험료 계		0 원	

• 그밖의 공제

2 개인연금저축 (2000년전 가입)	납입금액	6,060,000 원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7,500,000 원	

• 세액공제

3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납입액)	보험료	0 원	
	퇴직연금(납입액)	보험료	5,339,527 원	
	연금저축(납입액)	보험료	5,466,680 원	
	ISA계좌 만기 시 퇴직연금 계좌 추가 납입액	보험료	0 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 계좌 추가 납입액	보험료	1,676,207 원	

·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연금계좌 자료는 보험료 탭 하단 연금계좌 항목에 직접 금액을 입력합니다.

①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근로소득내역등록에 등록된 금액이 표기됩니다.

② 개연 연금저축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을 등록합니다.

③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과학 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 형 (DC형) 퇴직 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 등 회사 부담액 제외)
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납입한 금액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납입한 금액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 * 전환 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한도 확대) * 연금 계좌 납입 한도 초과시에만 적용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주택자금 및 월세액)

부양가족 | 보험/연금저축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6,723,968	원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0	원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0	원	600만원 한도
			15년~29년		0	원	1000만원 한도
			30년이상		0	원	1500만원 한도
			15년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원	2000만원 한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원	1800만원 한도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원	2000만원 한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770,512	원	1800만원 한도
				그밖의 대출	5,000,000	원	800만원 한도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원	600만원 한도

• 그밖의 공제 주택마련저축은 본인이 세대주일때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 세대주 체크 후 입력해주세요.

③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0 원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1.01 이후 가입자는 입력하지 마시고, 15.01.01 이전 가입자인 경우 17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0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0 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0 원	

•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공제세액	250,000 원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적용기간 : 27.12.31)
④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0 원	5.5천만원 이하 12% 5.5초과/7천만원 이하 10%
외국납부	국외납부세액	납부세액	0 원	
	국외 총급여	총급여	0 원	
⑤ 월세액		지출액	1,139,420 원	5.5천만원 이하 17% 5.5초과 / 8천만원 이하 15%

①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2024년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단 실거주)

·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자만 가능

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

③ 주택 마련 저축

주민등록등본 상 과세기간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

④ 주택자금 차입금 이제 세액공제

95.11.1~97.12.31취득 주택자금 차 임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⑤ 월세액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 세액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주택자금 및 월세액)

•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6,723,968 원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0 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0 원	600만원 한도
			15년~29년		0 원	1000만원 한도
			30년이상		0 원	1500만원 한도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원	1500만원 한도
			기타대출		0 원	500만원 한도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원	1800만원 한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770,512 원	1500만원 한도
				기타 대출	5,000,000 원	500만원 한도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원	300만원 한도

• 그밖의 공제 주택마련저축은 본인이 세대주일때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 세대주 체크 후 입력해주세요.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1,200,000 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0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1,800,000 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3,000,000 원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1.01 이후 가입자는 입력하지 마시고,
15.01.01 이전 가입자인 경우 17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1234567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한통신 (617-19-68038)	청약저축	청약저축	1983-05-28	1,200,000
디자인 이상 (209-06-32493)	5271097123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24-06-16	600,000
우림 (310-06-8973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24-06-16	600,000
합 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1-05-12	1,200,000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1234567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주) 우리은행	201-81-02819	1320400123456	2013-05-31	1,515,720
(주) 국민은행	201-81-68693	64800901234567	2018-08-26	3,223,401
(주) 국민은행	201-81-68693	64800901234568	2019-07-28	1,984,847
합 계				6,723,968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123456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S.K종합공사 (209-06-29912)	해당없음 (주택자금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2020-08-31 2040-08-31	20년	2022-08-30	2022-08-31	1,770,512	1,770,512
		25,000,000	0	25,000,000	0		
중앙은행 주식회사 (104-86-39742)	해당없음 (주택자금대출)	2016-05-15 2036-05-15	20년	2023-01-02	2023-01-02	7,167,652	5,000,000
		0	0	0	0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주택자금 및 월세액)

Q.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세대주가 ※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Q.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입력 하려고 하는데 입력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개인공제자료등록 인적공제에 근로자가 세대주로 선택되어 있어야 입력 가능 합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 보험/연금저축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관계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직불(선불)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					소비증가분	
		일반	일반	일반+주택거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전년도	당해년도
본인	[illegible]	12,587,739	3,156,726	[illegible]	254,000	1,723,870	382,610	5,705,057	2,086,440	20,307,802	26,402,329
배우자	[illegible]	[illegible]	0	[illegible]	[illegible]	0	0	0	0	0	0
배우직계존속	홍장인	0	0	0	0	0	0	0	0	0	0
배우직계존속	장장모	6,518,537	856,310	0	447,650	0	0	404,764	160,800	2,952,584	8,388,061
본인직계존속	고부친	0	0	0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영수	0	2,940,000	0	0	4,000,000	0	0	0	564,830	6,940,000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1234567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8,523,139	13,407,77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2,587,739	480,000	86,040	254,000	13,407,779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8,067,017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78,000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83,540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74,0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4,484,64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402,0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180,00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36,082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2,500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금액을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합니다.

· 입력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 액 구분으로 집계되어 표기됩니다.

✓ 신용카드/직불(선불)/현금영수증 구분에 맞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 보험/연금저축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직불(선불)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					소비증가분	
		일반	일반	일반+주택거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전년도	당해년도
본인	PDF테스트A	12,587,739	3,156,726	505,887	254,000	1,723,870	382,610	5,705,057	2,086,440	802	26,402,329
배우자	홍부인	0	0	0	0	0	0	0	0	0	0
배우직계존속	홍장인	0	0	0	0	0	0	0	0	0	0
배우직계존속	장장모	6,518,537	856,310	0	447,650	0	0	404,764	160,840	2,952,584	8,388,061
본인직계존속	고부친	0	0	0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영수	0	2,940,000	0	0	4,000,000	0	0	0	564,830	6,940,000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300,416	638,673	435,180	1,723,870	5,098,139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2,587,739	480,000	86,040	254,000	13,407,779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856,310	205,330	800,000	0	1,861,640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월별)내역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405,887	4,381,054	765,220	382,610	100,000	6,034,771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금액을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금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 사용금액의 합계를 등록 합니다.

✅ 신용카드/직불(선불)/현금영수증 구분에 맞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 보험/연금저축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직불(선불)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					소비증가분	
		일반	일반	일반+주택거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전년도	당해년도
본인	PDF테스트A	12,587,739	3,156,72	505,887	000	1,723,870	382,610	5,705,057	2,086,440	20,307,802	26,402,329
배우자	홍부인	0	0	1	0	0	0	0	0	0	0
배우직계존속	홍장인	0	0	0	0	0	0	0	0	0	0
배우직계존속	장장모	6,518,537	856,310	0	447,650	0	0	404,764	160,800	2,952,584	8,388,061
본인직계존속	고부친	0	0	0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영수	0	2,940,000	0	0	4,000,000	0	0	0	564,830	6,940,000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월별)내역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1234567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6,034,771	6,034,771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405,887	4,381,054	765,220	382,610	100,000	6,034,771

· 현금영수증 금액은 일반 + 주택임차료 거래의 합을 등록 합니다.

✓ 신용카드/직불(선불)/현금영수증 구분에 맞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 보험/연금저축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직불(선불)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					소비증가분	
		일반	일반	일반+주택거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전년도	당해년도
본인	PDF테스트A	12,587,739	3,156,726	505,887	254,000	1,723,870	389,610	5,705,057	20,307,802	26,402,329	
배우자	홍부인	0	0	0	0	0	0	0	0	0	0
배우직계존속	홍장인	0	0	0	0	0	0	0	0	0	0
배우직계존속	장장모	6,518,537	856,310	0	447,650	0	0	404,764	160,800	2,952,584	8,388,061
본인직계존속	고부친	0	0	0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영수	0	2,940,000	0	0	4,000,000	0	0	0	564,830	6,940,000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5,719,892	5,098,139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8,523,139	13,407,779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30,000	1,861,640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월별)내역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6,034,771	6,034,771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금액을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합니다.

· 직불/신용/현금영수증등의 2023년 사용금액의 합을 소비증가분 전년도에 입력 합니다.

✓ 신용카드/직불(선불)/현금영수증 구분에 맞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신용카드 등)

Q.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Q.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네,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인가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간소화에 조회된 현금영수증 금액이 – 금액입니다. – 금액으로 등록하나요?

(-) 금액이 이전 과세 연도의 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취소 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서는 제외(0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의료비)

부양가족 | 보험/연금저축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의료비 사용금액을 부양가족별로 각각 입력해주세요.(부양가족은 부양가족 탭에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코드	성명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의료비 일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임	의료비 장애인,65세이상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일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임	의료비 장애인,65세이상	실손의료보험금
본인	홍길동	364,730	0	0	0	0	0	0	0	0	0
본인직계존속	홍아빠	0	0	0	2,716,440	1,000,000	0	0	0	0	0
배우자	김배우	2,076,660	0	1,000,000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홍아들	149,100	0	0	0	0	0	0	0	0	0
합계		2,590,490	0	1,000,000	2,716,440	1,000,000	0	0	0	0	0

의료비의 항목별 합계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세액공제

의료비	난임시술비	지출액	1,000,000 원	대상금액	1,000,000 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출액	0 원	대상금액	0 원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6세이하	지출액	3,081,170 원	대상금액	2,081,170 원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2,225,760 원	대상금액	2,225,760 원
	실손의료보험금	합계금액	1,000,000 원	보전액	1,000,000 원
	의료비 계 (실손의료보험금 적용전 금액)		5,306,930 원	대상금액 계	5,306,930 원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금액을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을 등록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면 의료비에서 제외 후 공제 대상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교육비)

부양가족 | 보험/연금저축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관계 코드	성명	교육비[국세청 또는 그밖의 자료 교육비에 총금액 입력]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1	교육비 구분	공납금 (일반)	교복비	체험학습비	교육비 일반	교육비 장애인	교육비 일반	교육비 장애인
본인	고길동	본인	13,661,705	0	0	13,661,705	0	0	0
배우자	홍부인	대학생	102,000	0	0	102,000	0	0	0
본인직계존속	고부친	해당없음	0	0	0	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영수	대학생	10,393,600	0	0	10,393,60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철수	초중고 2	157,300	987,000	153,480	1,297,780	0	0	0
비속자녀(자녀/입양)	고돌리	초중고	3,647,360	0	0	3,647,360	0	0	0
합계			27,961,965	987,000	153,480	29,102,445	0	0	0

• 세액공제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 (대학원 포함)	13,661,705 원		전액
	취학전아동	유치원·학원등	0 명	0 원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공납금+교복비+체험학습비	2 명	4,945,140 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공납금	2 명	10,495,600 원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0 명	0 원	전액
	교육비계		29,102,445 원		

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금액을 해당 구분에 맞게 입력합니다.
교육비 등록 시 교육비 구분을 선택 후 금액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 업로드 시 교육비 구분은 업로드 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구분을 직접 선택한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육비 총 금액 (녹색 입력칸) 과 국세청 자료와 그 밖의 자료의 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공납금 (일반)	+	교복비	+	체험학습비	=	교육비 일반
151,300	+	987,000	+	153,480	=	1,297,780

별도로 등록 시 교육비 일반에 금액을 합산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기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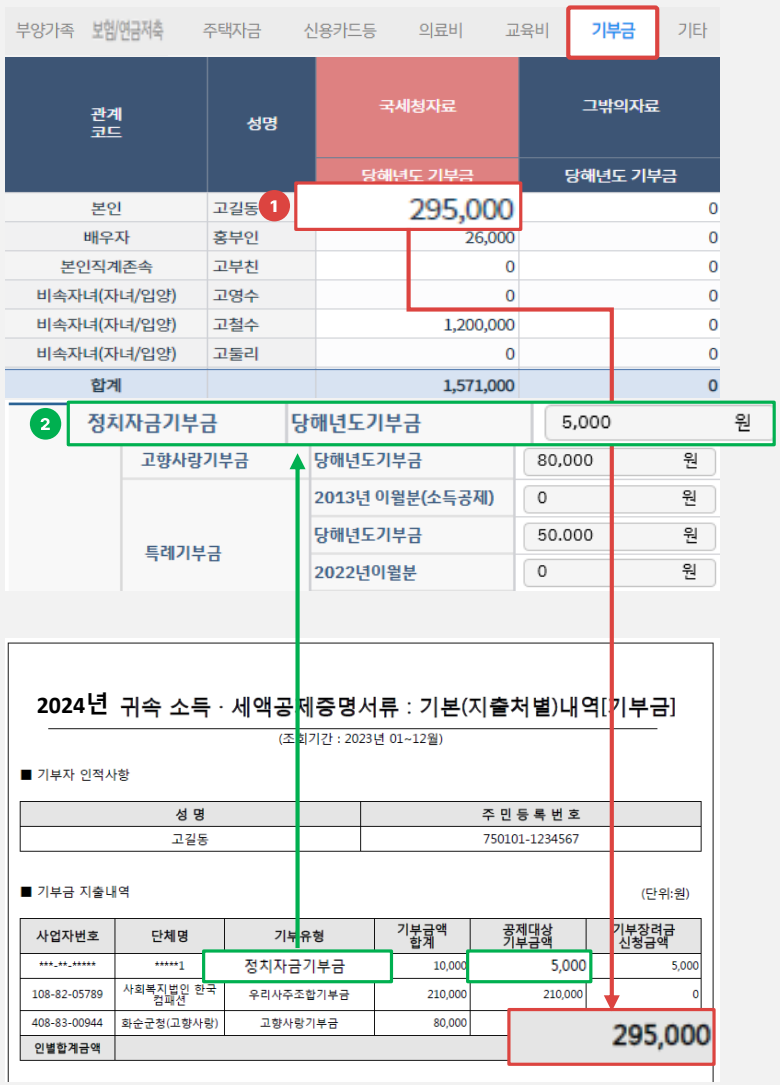

① 상단 국세청 자료 당해년도 기부금란에 기부금 총금액을 입력합니다.

② 기부 유형을 확인 후 하단 당해년도기부금에 기부 유형에 맞게 금액을 각각 등록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이월기부금)

① 이월기부금은 연말정산 2023년 기부금 공제 자료등록 페이지를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등록 전 기부금 공제 자료등록 메뉴에서 2022년도 조회 후 이월기부금 내역이 있는 사원은 기부년도와 유형 및 이월기부금을 확인 후 공제 자료등록의 기부금 입력 시 이월분 항목에 금액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당해년도기부금	5,000 원
	고향사랑기부금	당해년도기부금	80,000 원
	특례기부금	2013년 이월분(소득공제)	0 원
		당해년도기부금	50.000 원
		2023년 이월분	0 원
		2022년 이월분	0 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당해년도기부금	210,000 원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2013년 이월분(소득공제)	0 원
		당해년도기부금	1,200,000 원
		2023년 이월분	0 원
		2022년 이월분	0 원
	일반기부금(종교단체)	2013년 이월분(소득공제)	0 원
		당해년도기부금	0 원
		2023년 이월분	100,000 원
		2022년 이월분	0 원

4. 개인 공제 자료등록 (기타)

부양가족 | 보험/연금저축 | 주택자금 | 신용카드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기타

• 그밖의 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2020년 출자 · 투자분	벤처	출자 · 투자금액	0 원
		조합1	출자 · 투자금액	0 원
		조합2	출자 · 투자금액	1,200,000 원
	2021년 출자 · 투자분	벤처	출자 · 투자금액	0 원
		조합1	출자 · 투자금액	0 원
		조합2	출자 · 투자금액	1,000,000 원
	2022년 출자 · 투자분	벤처	출자 · 투자금액	0 원
		조합1	출자 · 투자금액	0 원
		조합2	출자 · 투자금액	118,698 원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2,318,698 원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0 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6,000,000 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500,000 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0 원

•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면기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0%	0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70%	0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	0 원

· 벤처 투자조합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해당 내역에 포함되는 사원은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장기집합투자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	90%	과세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등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 여성	① 퇴직 전 1년이상 근로소득이 있을것 ②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 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는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누리집) →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안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책자)

5. 연말정산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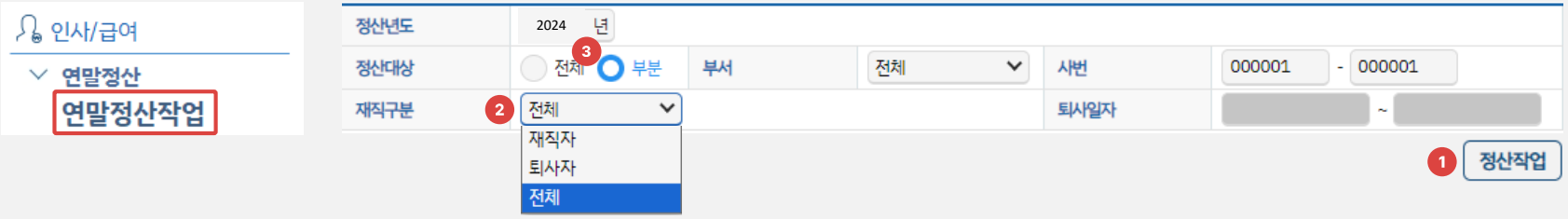

연말정산 작업은 전 직장 내역, 연근로소득 내역,
개인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메뉴입니다.

① 전 직원의 연말정산 작업을 할 경우 정산 대상과 재직 구분을 전체로 놓고 **정산 작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재직자 또는 퇴사자만 정산 작업을 하고 싶다면 재직 구분을 재직자 또는 퇴사자로 선택한 후 정산 작업을 클릭합니다. (퇴사자만 정산할 경우 퇴사 일자를 함께 입력합니다.)

③ 특정 직원만 정산하고자 할 경우 정산 대상을 부분으로 선택한 후 오른쪽에 해당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고 정산 작업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 작업합니다.

6. 의료비 공제 자료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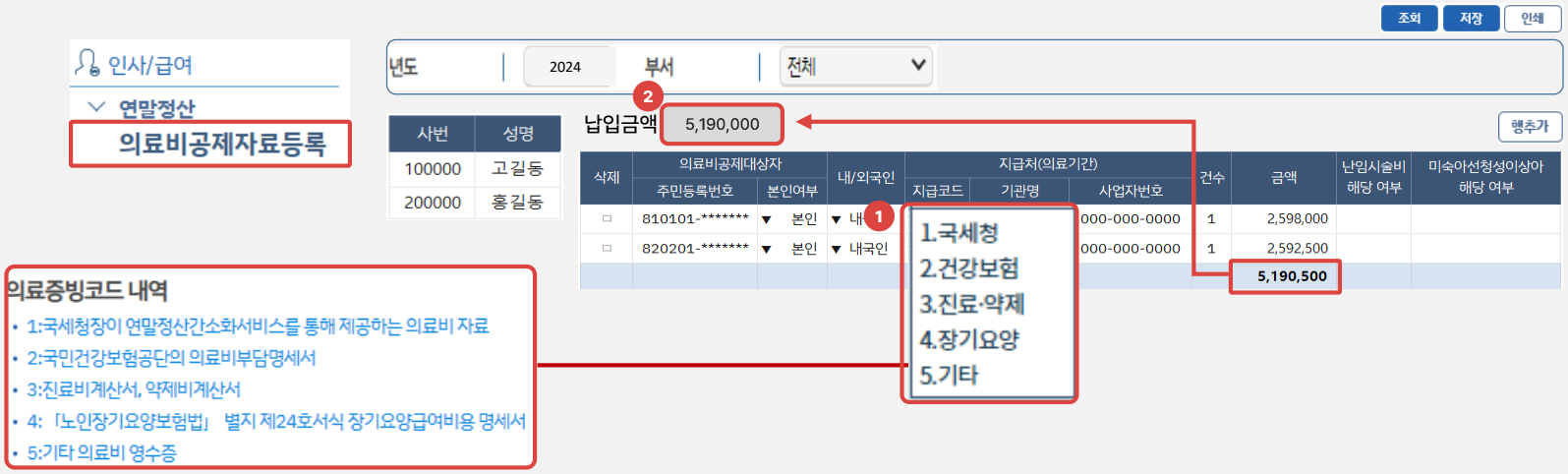

의료비 공제 받은 사원의 공제 자료를 입력 하는 메뉴입니다.
의료비를 입력한 사원이 아닌 입력한 의료비를 통해 세액이 공제된 사원만 등록합니다.

의료비 공제 자료등록 페이지에서 조회 시 조회되는 사원은 의료비 공제 자료를 추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력할 사원을 선택 후 행 추가 하여 의료비 제출자료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급코드는 아래의 의료증빙코드를 확인 후 선택하여 주세요.

② 상단 납입금액과 입력한 총 금액이 동일 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 및 사업자 번호 등록 시 숫자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7. 기부금 공제 자료등록

기부금 자료가 등록된 사원의 기부금 상세 자료를 입력 하는 메뉴입니다.

· 기부금 공제자료등록 페이지에서 조회 시 조회되는 사원은 기부금 자료를 추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① 조회된 사원을 선택 후 오른쪽 화면에서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개인 공제 자료의 당해 기부금을 확인 후 해당 내역에 맞는 기부 내역을 등록하기 바랍니다.
등록 후 저장 시 아래 기부금 조정내역에 당해 공제받은 금액과 이월금액이 구분되어 등록됩니다.

②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 유형에 맞게 이월 기부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공제 자료등록의 기부금 탭에도 해당 년도에 이월기부금을 등록해야 함)

7. 기부금 공제 자료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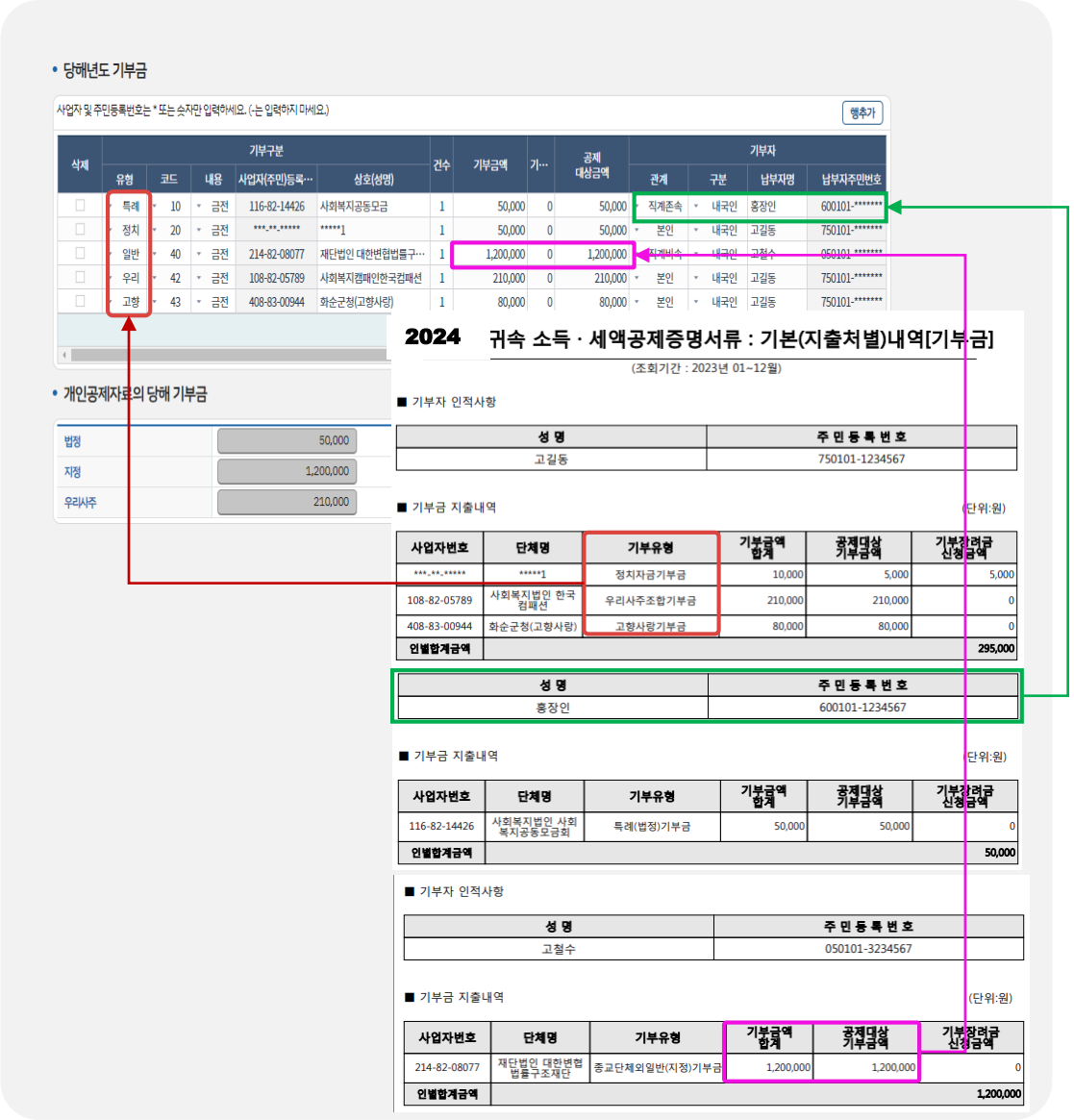

• 당해년도 기부금

사업자 및 주민등록번호는 * 또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는 입력하지 마세요.)

행추가

삭제	기부구분					건수	기부금액	기…	공제 대상금액	기부자			
	유형	코드	내용	사업자(주민)등록…	상호(성명)					관계	구분	납부자명	납부자주민번호
	특례	10	금전	116-82-14426	사회복지공동모금	1	50,000	0	50,000	직계존속	내국인	홍장인	600101-*******
	정치	20	금전	***.**.*****	*****1	1	50,000	0	50,000	본인	내국인	고길동	750101-*******
	일반	40	금전	214-82-08077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	1	1,200,000	0	1,200,000	직계비속	내국인	고철수	050101-*******
	우리	42	금전	108-82-05789	사회복지캠페인한국컴패션	1	210,000	0	210,000	본인	내국인	고길동	750101-*******
	고향	43	금전	408-83-00944	화순군청(고향사랑)	1	80,000	0	80,000	본인	내국인	고길동	750101-*******

• 개인공제자료의 당해 기부금

법정	50,000
지정	1,200,000
우리사주	210,000

2024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3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1234567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	*****1	정치자금기부금	10,000	5,000	5,000
108-82-05789	사회복지법인 한국 컴패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10,000	210,000	0
408-83-00944	화순군청(고향사랑)	고향사랑기부금	80,000	80,000	0
인별합계금액					295,000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1234567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16-82-14426	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특례(법정)기부금	50,000	50,000	0
인별합계금액					50,000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3234567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214-82-08077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종교단체외일반(지정)기부금	1,200,000	1,200,000	0
인별합계금액					1,200,000

- 기부금 공제자료등록에서 유형 구분은 기부금 제공서류의 기부유형을 확인 후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근로자와 기부자와의 관계 및 주민번호등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액과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8. 월세액/주택임차등록

월세액 및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 공제받은 사원에 추가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 월세액 / 주택임차 등록 메뉴에서 조회 시 검색되는 사원의 월세 및 주택임차 등록 자료를 등록 합니다.

① 상단 납입금액과 공제금액을 참고하여 월세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및 사업자 번호는 숫자만 입력 바랍니다.)

※ 당해 연도 월세 세액 공제금액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당해 연도 기본 공제 대상 배우자, 자녀가 계약한 경우도 공제됨

1) 금전소비대차 : 당사자가 어느 일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하며 작성하는 계약 문서

2) 임대차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9. 연금/저축공제자료등록

· 조회 시 검색되는 사원을 선택 후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 마련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소득자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기관별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① 공제금액이 0원인 경우 등록하지 않습니다.

② 납입금액과 공제금액이 조회되면 해당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를 등록 후 납입금액과 공제금액을 등록합니다.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를 빼고 입력합니다.

10. 연말정산결과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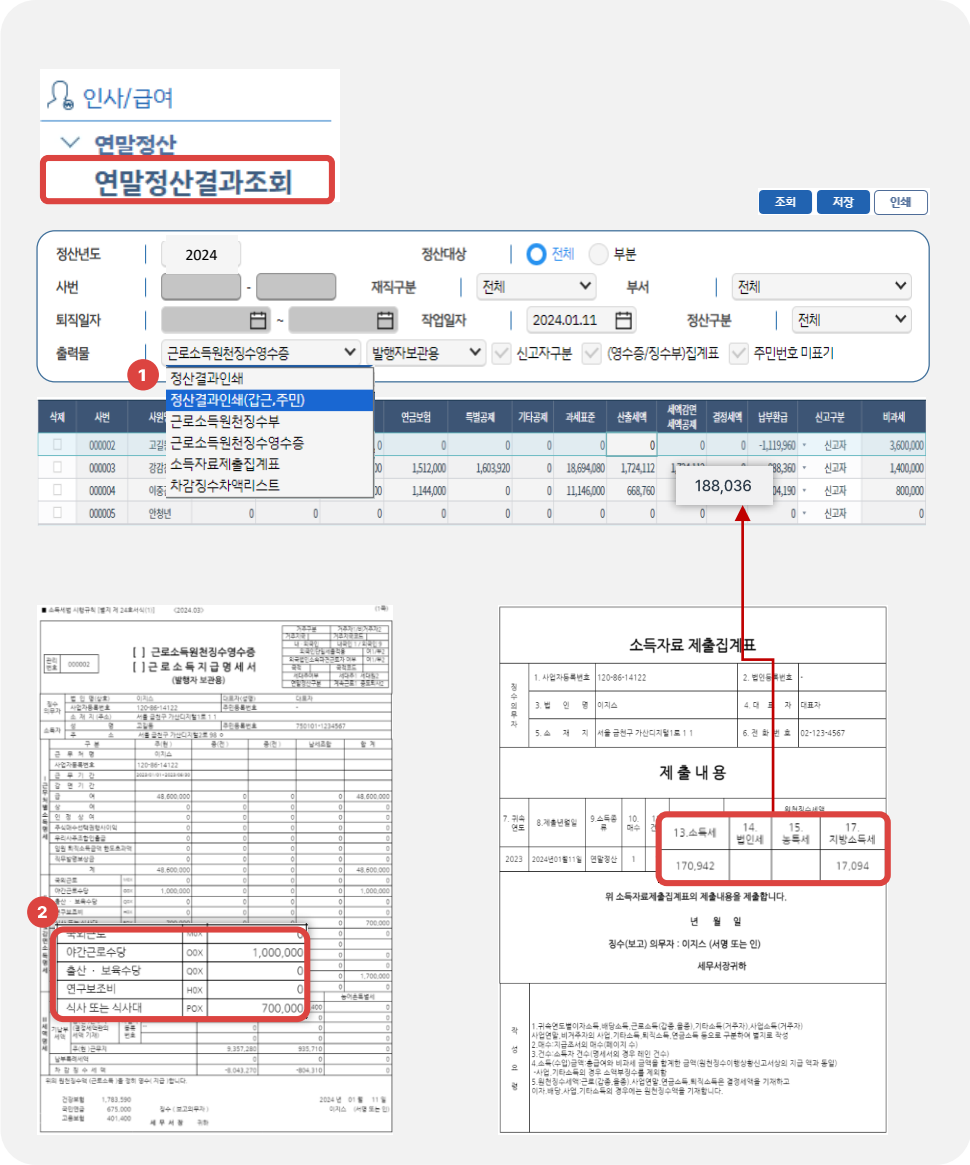

연말정산 작업을 완료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등의 양식을 출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① 출력물을 선택하여 인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야간근로 및 식사때 비과세 표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의 소득세 금액은 결정세액 금액이 표기됩니다.

10. 연말정산결과조회

Ⅳ 정산명세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539,750
				공제금액	539,750
		공적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군인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0
				거주자	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0
					15년~29년	0
					30년이상	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그 밖의 대출	0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그 밖의 대출	0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기부금(이월분)					0
		계					0
차감소득금액							14,117,395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0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청약저축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투자조합출자 등					0
		신용카드 등 사용액					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0
		그 밖의 소득공제 계					0

세액공제	자녀	출산.입양자 (0명)		0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10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계				0
	표준세액공제					130,000
	납세조합공제					0
	주택차입금					0
	외국납부					0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세액공제계					700,684
결정세액						336,925

· 국세청에서는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XPERP에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금액과 표준 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의 금액이 모두 0원일 경우 표준 세액공제(13만 원)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표준 세액공제에 13만원으로 표기

10. 연말정산결과조회

Ⅳ 정산명세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를 적용시에는 연간			49,200,000
	근로소득공제			12,210,000
	근로소득금액			36,990,000
	기본공제	본인		1,500,000
		배우자		1,500,000
		부양가족 (5 명)		7,500,000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		1,000,000
		장애인 (2명)		4,000,000
		부녀자		0
		한부모가족		0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2,214,000
			공제금액	2,214,000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군인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0
			공제금액	0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대상금액	1,967,400
			공제금액	1,967,400
		보험료 /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442,800
			공제금액	442,800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0
			거주자	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0
			15년-29년	0
			30년이상	0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그 밖의 대출	0
		2015년 이후 차입분 /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770,512
			그 밖의 대출	0
		2015년 이후 차입분 /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기부금(이월분)		0
		계		4,180,712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감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조세조약』		
	세액감면계		
근로소득			
자녀	공제대상자녀 (1 명)		
	출산.입양자 (0 명)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른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일반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 (-) 인적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전액공제)

·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총급여액	공제액 (2,000만원 한도)	공제액 (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	총급여액으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초과액으 40%	총급여액*40%+150만원
1,5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의 15%	총급여액*15%+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5%+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2%+1,275만원

10. 연말정산결과조회

44,740,120	종합소득 과세표준			25,955,812
11,961,018	산출세액			2,633,371
32,779,102	세액감면	『소득세법』		0
1,500,00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외)		0
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0
1,500,000		『조세조약』		0
0		세액감면계		0
0		근로소득		660,000
0		결혼세액공제		0
0		자녀	공제대상자녀 (1 명)	150,000
0			출산.입양자 (0 명)	0
0		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0		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0		연금계좌 /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0		연금계좌 /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0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1,000,000
1,814,900			세액공제액	120,000
1,814,900		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0
408,390			세액공제액	0
408,390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3,657,797
0			세액공제액	548,669
0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300,000
0			세액공제액	45,000
0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0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0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0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0		기부금 /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0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2,223,290		기부금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0
27,555,812			세액공제액	0
0		기부금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0
1,000,000			세액공제액	0
0		기부금 / 계		713,669
600,000		표준세액공제		0
0		납세조합공제		0
0		주택차입금		0
0		외국납부		0
0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0
0			세액공제액	0
0		세액공제계		1,523,669
1,600,000	결정세액			1,109,702
0	실효세율(%)			2.5

· 종합소득 과세 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근로소득/ 결혼세액/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주택자금차입금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계)

* 세액공제계 = 근로소득~월세액까지 계산된 감면 총액

11. 정산디스켓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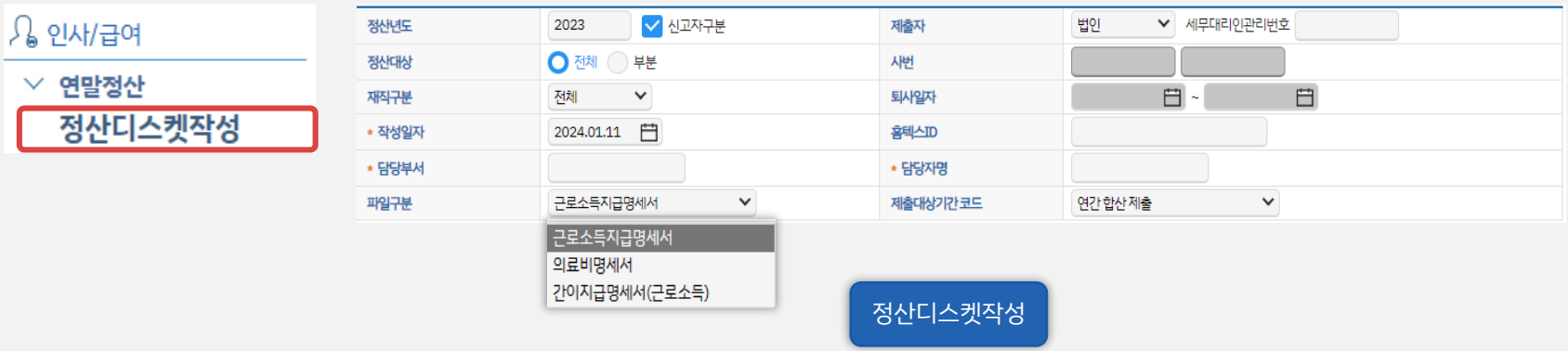

- 재직구분 신고대상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전체 (재직자+퇴사자) / 재직 (재직자) / 퇴직자 (퇴직자)
- 작성일자,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입력합니다.
-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의료비 명세서를 선택 후 정산디스켓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장 된 파일은 홈택스 로그인 후 파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신고 방법 안내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종합안내

11. 정산디스켓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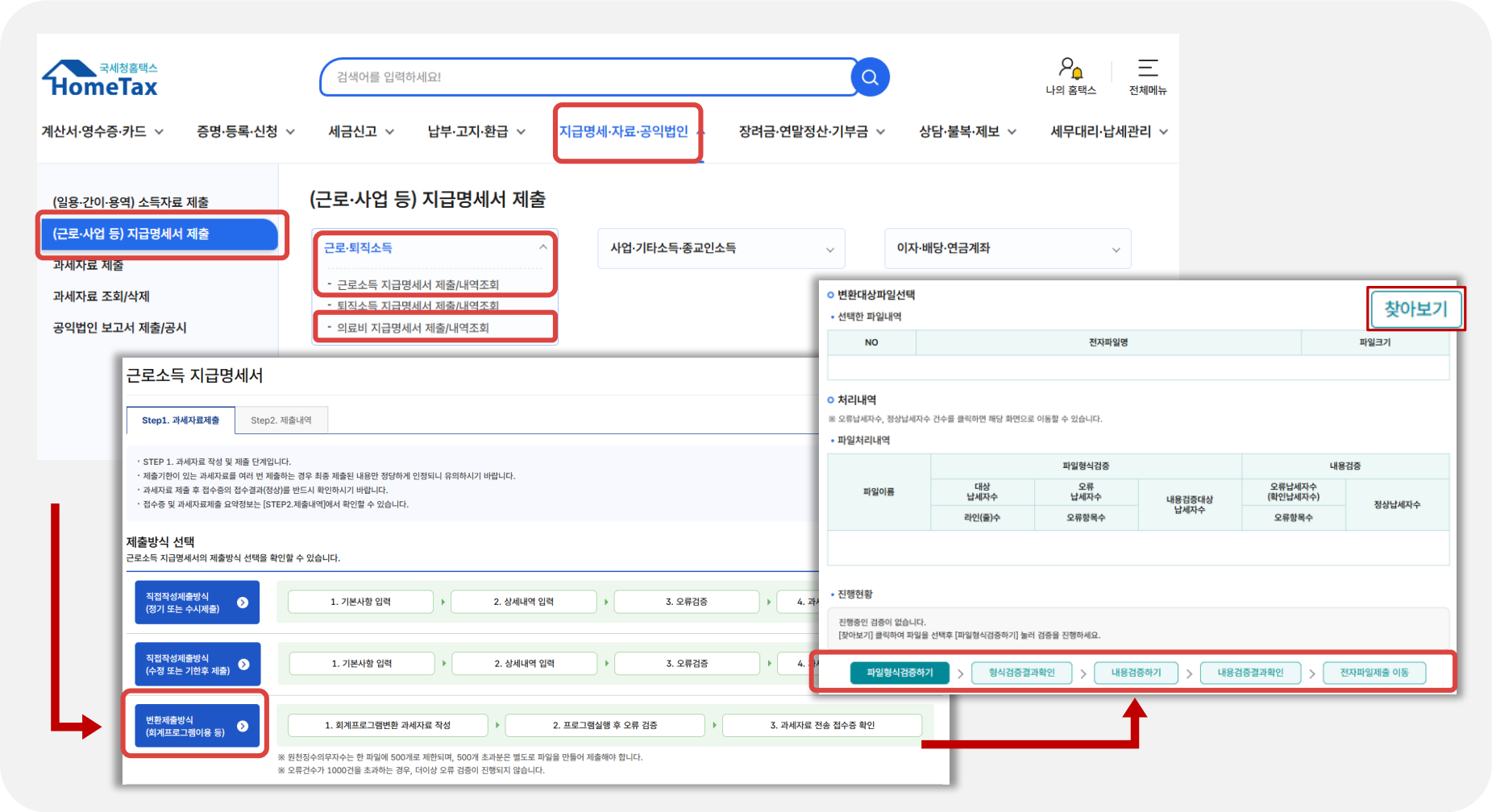

XpERP에서 작성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지급명세서 파일을 홈택스에 변환 제출 방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정산디스켓작성

변환대상파일선택

• 선택한 파일내역

찾아보기

NO	전자파일명	파일크기
1	C1018276.056	22,092 Byte

처리내역

※ 오류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건수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파일처리내역

파일이름	파일형식검증			내용검증	
	대상 납세자수	오류 납세자수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오류납세자수 (확인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라인(줄)수	오류항목수		오류항목수	
C1018276.056	1	1	0	0 (0)	0
	11	4		0	

• 진행현황

[파일형식검증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용검증이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내용 확인후 다시 변환하세요.

파일형식검증완료 > 형식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내용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이동

작성한 파일을 선택 후 아래 순서를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검증결과 확인에서 오류 건수가 0이면, 정상 처리로 신고 반영
오류 건이 나타나면 오류 건수를 클릭하면, 오류 내용을 확인 후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재 작업 후 정산 디스켓 재 작성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정산디스켓작성

Q. 정산디스켓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정산디스켓 파일은 메모장/워드패드/EDIT 등으로 실행가능 하나 일반 문서로 열 수 없습니다. 굳이 열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파일 확인되므로 확장자명을 변경하여 저장하지 마세요.

Q. 오류내용을 모르겠어요?

오류건수를 클릭하면 내용검증 및 오류내역 상세내역이 나타납니다. 해당근로자의 오류내용 을 확인 후 해당 내역을 수정 후 재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Q. 총급여와 비과세 소득금액(주현근 무지+종전근무지)의 합계가 0 인 지급명세서는 제출 불가능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무슨 말인가요?

해당 근로자의 연근로소득내역 전직장내역 합과 연말정산결과조회에서 나온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원은 연말정산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에 등록된 기부금과 기타 기부금의 합[3,500,000]은 해당 연도 기부명세(I레코드)의 기부금합계[3,140,000]와 같아야 합니다.

기부금공제자료등록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저장 후 정산디스켓 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Q. 세무서 코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란 오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지관리>단지정보>연말정산기본정보등록 에서 2024년 조회 후 세무서코드 3자리를 등록 저장 후 정산디스켓 작성하여 주세요.

Q. 기부유형코드가 20.42.43 인경우 관계코드가 반드시 거주자 본인 이어야 합니다.

정치.고향사랑 우리사주기부금은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12. 징수환차/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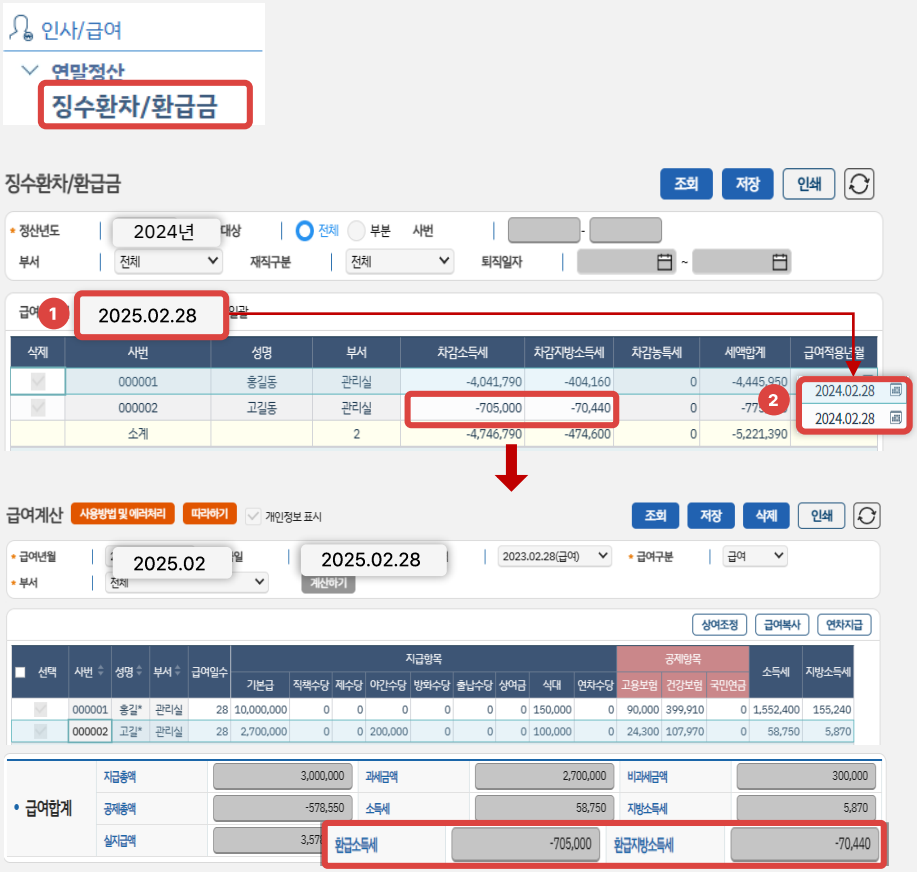

연말정산 작업 후 차감징수세액을 급여에 반영 하는 메뉴입니다.

· 정산년도 2024년으로 조회합니다.

① 급여적용일에 급여지급일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급여적용년월에 급여지급일이 나타납니다.

③ 급여계산에서 급여적용일로 급여 계산 시 환급소득세 / 환급지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급여계산하기 전 징수환차/환급금 메뉴에서 급여적용년월을 등록해주어야 급여에 반영됩니다.

✓ 급여계산 후 명세서를 출력하면 적용된 징수환차/환급금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